

# 도서관이용범칙자 처리 내규

## 제 1 조 (목적)

본 내규는 중앙도서관 규정 및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관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이용제한) 도서관이용에 따른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.

### 1. 자료절취 및 무단반출

1) 학칙에 따라 징계요청 및 변상(중앙도서관규정 제26조)

2) 6개월간 도서관 출입 및 이용정지

3) 졸업생은 1년간 출입정지

### 2. 장기연체자(30일 이상 연체자) 및 대출도서 전대행위자

1) 연체도서 반납일로부터 30일이상 연체자는 30일간 대출정지

2) 장기연체자는 연체도서 반납시까지 도서관 출입정지 및 교내 민원서류 발급정지

3) 대출도서를 전대한 자는 30일간 대출정지

### 3. 학생증 부정사용자

1) 1회 위반자 : 대여자 및 차용자 각 1개월간 대출정지, 타교생에게 대여시 2개월간 대출 정지

2) 2회 위반자 : 3개월간 대출정지

3) 3회 이상 위반자 : 6개월간 대출정지 또는 3개월간 도서관 출입 정지

### 4. 졸업생의 학생증, 대출증 및 출입증 부정사용자

1) 학생증, 대출증 및 출입증을 즉시 회수

2) 향후 1년간은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음

## 부 칙

제 1 조(시행일자) 본 내규는 2000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시행일자) 본 내규는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